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
번호

224

제출년월일 : 1994. 1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4074호 '93.12.31)에서 『별표9』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지급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

2. 주요골자

- 내무부장관의 승인된 금액 50,000원 = 50,000원 ~ 200,000원
 ※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
- 우리시 지급기준액

부	서	별	지	금	금	액
○ 화장장에서 시체화장업무 처리부서				200,000원		
○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업무 담당부서				180,000원		

3. 개정근거

-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074호)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4 조(장려수당)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업무,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[별표 4] 과 같다.

[별표 4]

장려수당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200,000원
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근부자	180,00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